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4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한병도·신영대·조 국

김윤덕 • 이해식 • 장철민

전진숙 • 진선미 • 윤준병

강유정 • 이원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.

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,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,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 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의 국회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예비비의 관리와 사용) ①	제51조(예비비의 관리와 사용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
	에 따라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
	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
	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
	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
	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
	<u> 여야 한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